

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 
〔2022. 11. 23.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2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  
전문위원 장 석 현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106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## 2. 개정이유

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설치와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도시관리국 사무분장 정비  
(안 제2~제3조, 제8조)
- 나. 부구청장 소속으로 ‘원도심활성화 추진단’ 신설(안 제10조의 2)
- 다.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
(기존) 2023년 6월30일 → (변경) 2026년 6월30일(부칙 안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 10. 13. ~ 2022. 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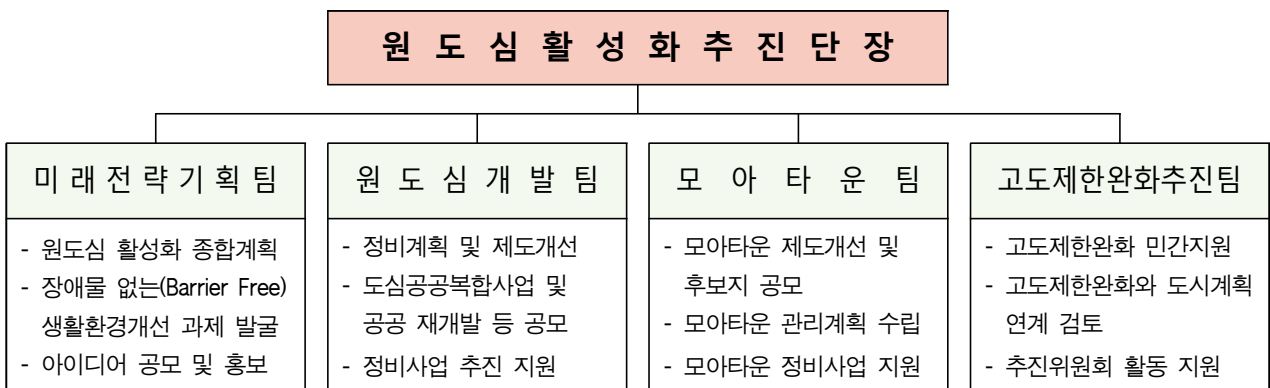
-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‘추진단장’ 및 ‘원도심활성화 추진단’ 을 추가하여 원도심활성화 전담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
- 안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국의 분장 중 ‘도시기본계획’ 결정을 추가하고 ‘수립 및 정비사업, 주거환경 개선, 고도제한 완화’ 를 ‘수립’ 으로 수정함

- 안 제10조의2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인 ‘원도심활성화 추진단’ 1)을 부구청장 소속으로 신설함
-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신청사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‘2023년’ 에서 ‘2026년’ 으로 수정함  
(기존) 2023년 6월30일 → (변경) 2026년 6월30일

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
-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인 결과로 도출됨에 따라 화곡동, 등촌동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원도심 내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도심 균형 사업을 추진하고, 또한 신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## 1) 조직 구성(안)



**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**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**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